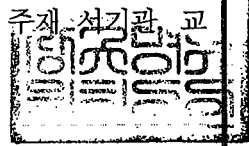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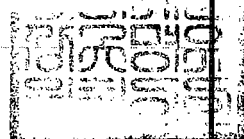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권 중 현	일본명	
	한자	權 重 顯	이 명	호 經農 / 자 致玉 초명 在衡
출생 연월일	1854년 10월 8일		사망 연월일	1934년 3월 19일
	충청북도 영동군 [1914년 주소]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54.10. 8	출생 (安東權氏 大同世譜 7권 樞密公派, 509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29, 766쪽)		
	1883.	부산 감리서 서기관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29쪽)		
	1890.	전보국 주사, 인천항 幫辦, 일본 주재 서기관, 교 섭아문 주사, 일본 주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29쪽)		
	1891. 9. 2~1893. 5.20	일본 주재 辦事 대신 서리 (같은 자료)		
	1891.12.12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항해 등 조약 체결 (같은 자료; 조선신사보감 귀족부[1914], 25쪽)		
	1894.	외무아문 참의, 한성부윤, 군무아문 협판 (같은 자료)		
	1895.	군무 대신 임시 서리 사무, 군부 협판, 육군 참장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29쪽, 766쪽)		
	1896. 2. ~ 1897. 3.	법부 협판, 고등재판소 판사, 농상공부 협판 (같은 자료)		
	1898. 4. ~ 1898.12.	軍法 起草委員, 의정부 참찬, 농상공부 협판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766쪽)		
	1899. 3. 1 1900. 7.15 1901. 5.19~1904. 3. 7	의정부 찬정 (같은 자료)		



1899. 7. 8	표훈원 부총재 겸임 서리 총재 사무 (같은 자료)
1899. 9.21~1899. 9.23 1899.12.10~1899.12.19	임시 탁지부 대신 서리 사무 (같은 자료)
1899.10.10~1900. 1.22 1900. 3.24~1900. 5.28 1900. 8.29	법부 대신 (같은 자료)
1899.12. 2~1899.12.18	원수부사무국 총장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0. 4.22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3등 태극장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0. 7. 2	표훈원 부총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766쪽)
1900. 9.10	법규교정소 의정관 (같은 자료)
1900.10.11	농상공부 대신 (같은 자료)
1901. 2.24~1901. 5.11 1901.12.25~1902. 1.19 1902. 2. 2~1902. 2.15	군부 대신 임시 서리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1. 9.21~1901.10. 1	원수부 회계국 총장 겸임 서리 사무 (같은 자료)
1901.10.13	표훈원 의정관 (같은 자료)
1902. 1.13~1902. 2. 7 1903.10.19~1903.11.29	육군 무관학교장 겸임 서리 사무 (같은 자료; 승정원일기, 1903년 8월 29일, 10월 10일)
1903. 7.20	육군법원장 (고종실록, 1903년 7월 20일)
1903. 9.30	중앙은행 창설 사무위원 (승정원일기, 1903년 8월 10일)
1903.11.18~1903.12. 2	원수부 기록국 총장 겸임 서리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4년 ~ 1945년

1904. 3. 8	의정부 찬정 (고종실록, 광무 8년 3월 8일; 황성신문, 1904년 3월 11일)
1904. 3.13~1904. 6.23	서리 扈衛隊 총관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4. 3.15	일본 특파 대사 영접위원 (고종실록, 광무 8년 3월 15일; 황성신문, 1904년 3월 17일)
1904. 4. 5~1904. 4.11	겸임 임시 서리 궁내부 대신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4. 5. 2~1907. 9. 3	육군 부장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767쪽)
1904. 7.13~1904.12.31	러일전쟁 시기 일본 육해군 遼陽, 旅順 전투 참전 일본군 위문사 (고종실록, 1904년 7월 13일, 12월 31일)
1904. 8. 4	일본 정부로부터 러일전쟁 위문에 대한 공로로 훈 1등 瑞寶大綬章을 받음 (조선귀족이력서, 26쪽; 조선귀족열전, 94쪽)
1904.10.2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팔괘장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67쪽; 조선귀족열전, 94쪽)
1904. 8.16 1905. 3.20 1906. 7.27	표훈원 의정관 (고종실록, 1904년 8월 16일, 1905년 3월 20일, 1906년 7월 27일)
1904. 8.20	의정부 찬정 겸임 평리원 재판장 임시 서리 사무 (고종실록, 1904년 8월 20일)
1904. 8.26	군제 의정관 (고종실록, 1904년 8월 26일)
1904. 9.22~1904.10.26	겸임 철도원 총재 임시 서리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4.10.2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팔괘장을 받음 (고종실록, 1904년 10월 25일)
1904.10.27	관제 교정소 의정관 (고종실록, 1904년 10월 27일)

1904.12.31~1905. 1.29 1905. 8.16~1905. 8.18	법부 대신 (고종실록, 1904년 12월 31일, 1905년 1월 29일, 8월 16일, 18일)
1905. 1.29~1905. 5.16 1905. 8.18~1905. 9.26 1906.11.25~1907. 5.22	군부 대신 (고종실록, 1905년 1월 29일, 1905년 5월 16일, 8월 18일, 9월 26일; 관보, 1906년 11월 26일, 1907년 5월 23일 호외)
1905. 2. 1	참모부 총장 임시 서리 사무 (고종실록, 1905년 2월 1일)
1905. 6. 6~1905. 6.18	충청남도 관찰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5. 8.14~1905. 8.18	贊謀官 (같은 자료)
1905. 9.26~1906.11.25	농상공부 대신 (고종실록, 1905년 9월 26일, 1906년 11월 25일)
1905.11.17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에 찬동 (고종실록, 1905년 12월 16일; 매천야록 하권, 250~252쪽; 대한계년사 7권, 148~170쪽)
1905.12.25~1906. 2. 2 1906. 2.24~1906. 5.15	표훈원 총재 임시 서리 사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0쪽)
1906. 6.10	여자교육회 양규의숙장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0일, 9월 8일, 11일; 황성신문, 1907년 5월 2일, 4일, 11일, 15일, 24일, 6월 3일, 24일, 25일)
1906. 9. 5	농상공부 대신 겸임 광산사무국 총재 (고종실록, 1906년 9월 5일)
1906.10.19	농상공부 대신으로서 이등박문과 '압록강, 두만강 삼림 경영 협동조약' 체결 (고종실록, 1906년 10월 19일)
1906.11.17~1906.11.25	군부 대신 임시 서리 사무 (고종실록, 1906년 11월 17일)
1906.12	동아개진교육회 회장 (황성신문, 1906년 12월 16일, 20일, 1907년 1월 10일)
1907. 5.31~1910. 8.29	중추원 고문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29쪽, 767쪽)

1907. 6.12~1907. 8.30	일본국 박람회 시찰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331쪽)
1907.10.10	일본국 황태자 渡韓 환영을 위해 조직된 紳士會 평의원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2일, 15일, 16일, 18 일; 황성신문, 1907년 10월 12일, 15일, 16일, 18 일)
1907.12.28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태극장을 받음 (순종실록, 1907년 12월 28일)
1908. 5.26	대한여자흥학회 고문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29일, 7월 15일; 공립 신보, 1908년 6월 24일)
1908.11. 7	일본 정부로부터 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음 (조선귀족이력서, 26쪽;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67쪽)
1908.11. 8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으로 참여 (대한산림협회 취지서 등 관계 서류, 1908년 11월)
1910.10. 3~1920. 5.20	조선총독부 증추원 고문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조선총독부관 보, 1920년 5월 15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 錄;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동아일보, 1920년 5월 12일)
1910.10. 7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순종실록, 19 10년 10월 7일; 조선귀족이력서, 26쪽;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8일, 11일, 1911년 2월 23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5만원의 은사공채를 수령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齋藤實文書 100.6]; 朝鮮貴族略歷[齋藤實文書100.4];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5월 22일 부록)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정5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조선귀족이력 서, 26쪽)
1914.11. 5	불교진흥회 고문 (불교진흥회월보, 제1호 1915년 3월)

1915. 1.16	삼십본산연합사무소 회주 (三十本山聯合事務所, 視察一束, 朝鮮佛教叢報 제7호, 1917년 11월 20일)
1915.11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 대례 참가를 위해 渡日 (순종실록, 1915년 11월 3일)
1915.11.10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 시 일본 정부로부터 대례 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6년 12월 13일)
1917. 2.21	불교옹호회 회주 (조선불교총보, 제2호, 1817년 4월 30일, 제7호 1917년 11월 20일)
1918. 4.10	일본 정부로부터 종4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4월 17일; 조선귀족이력서, 26쪽)
1922.11.20	조선불교단 회장 (김순석, 朝鮮佛教團研究, 1995)
1923. 1.10	조선사편수회 고문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1925. 7.20	조선사편수회 위원 (동아일보, 1925년 7월 25일)
1929. 7. 2~1934. 3.22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7월 2일, 1932년 7월 7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동아일보, 1932년 7월 5일)
1930.12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창조원 (매일신보, 1930년 2월 23일)
1934. 3.22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 4월 2일; 顧問 薨去 통지건, 史朝庶 제108호, 昭和 9년[1934] 3월 19일; 安東權氏 大同世譜 7권 樞密公派, 509쪽)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의병부대 진압명령

▶ 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 8권, 소명출판, 2004, 52~53쪽.

“이 때 강원도 영월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관군 2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경상도 예안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관군 2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삼척, 영해, 봉화, 영양 등의 군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중략) 12월 20일 군부대신 권중현이 진위대(鎭衛隊) 병사 1백 명을 각 고을에 파견했다”

▶ 「제149호 영월 지방 폭민의 건」,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

“강원도 영월 지방에서 의병이라 칭하는 폭민의 집단이 각기 무기를 가지고 그 방면 각 지방에 출몰하여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니 군사령부 및 우리가 파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정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주 진위대도 당 정부에 보고하였으므로 본 공사는 이 진압방법에 관하여 당 정부에 문의하였던 바 별지와 같이 군부대신[권중현 - 작성자]으로부터 회답이 있었으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폭도는 지난 달 29일 본 공사의 326호 電稟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敬具

명치38년 9월 18일

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외무대신 백작 桂太郎 殿

[별지]

敬覆者昨奉

大極誦悉은是寧越等地匪徒一事는頃接原州鎭衛隊大將金演蕃報告則該匪類가剽奪民財에勢甚猖獗하야不可以□千兵卒로鎭壓이다이옴기自敝部로□發該隊兵弁五十名하야使

尉官一員으로領率前往該地方하여不日剿除之意로方已發令於該隊長하였사오니照亮하
심을爲要

광무(光武)9년 9월 16일 권중현

하야시[林] 공사 각하”

2. <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 찬성

▶ 『고종실록』, 1905년 12월 16일; 『승정원일기』, 1905년 11월 20일.

“의정부 의정 대신이며 학부대신인 이완용,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농
상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이근택 등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이러하
였다.

생각건대 신 등이 훌륭한 왕조에 죄를 지고 삼가 처분을 기다린 날도 대체로 며칠
이 되었는데 (중략) 가만히 보건대 시국에는 역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입니다. 신 등이 요즘 상소문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규탄하고 논의를 벌인 것들은
대체로 신들이 인정하는 잘못과 같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나라가 이미
망하고 종묘 사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백성들은 노예로 되고 강토는 영지로 되었다
고 인정하는데 이렇듯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저 무리들이 과
연 새 조약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조약 체결의 과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 대사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 작성자]
이 서울에 올 때에 어린애들과 심부름꾼들까지도 다 이제 무슨 중대한 문제가 꼭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11월 15일 두 번째로 폐하를 만나본 뒤에 심상
치 않은 문제를 제출하니 폐하가 곧 승인하지 않고 의정부에 맡겼습니다. 이튿날
16일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 및 신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근택은 대사가 너무 조르기 때문에 이 해우관에 가서 모였고 경리원경

심상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신 박제순은 공사 林權助[하야시 곤스께 - 작성자]의 요청에 의하여 혼자서 공사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날 제출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고 하였으나 신 등은 끝내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중략)

신 권중현은 말하기를, ‘이 문제는 비록 대사가 폐하에게 말하였고 공사가 외부에다 공문을 냈지만 우리들은 아직 외부에서 의정부에다 제의한 것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당장 토의결정할 수 없으며 또 중추원의 새 규정이 이미 반포된 만큼 반드시 여론을 널리 수집해야만 비로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공사는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는 전제 정치인데 어찌하여 입헌 정치의 규례를 본따서 대중의 의견을 묻습니까. 나는 대황제의 왕권이 무한하여 응당 한 마디 말로써 직접 결정하지 이러저러하게 질질 끄는 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중내부 대신에게 전화를 걸어 폐하를 만나볼 것을 청하였으니 여러 대신들은 함께 대궐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여러모로 극력 반대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의정부의 수직 서는 곳에 와서 기다렸으며 일본 공사는 관원을 데리고 뒤따라 와서 휴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 등이 들어가서 폐하에게 각기 경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략)

신 권중현이 제의하기를, ‘지금 학부대신이 말한 것은 꼭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질문할 말을 만들어서 여지를 마련해 보지는데 불과할 뿐입니다.’라고 하니 폐하가 말하기를, ‘이런 것은 다 일을 의논하는 규례이니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여러 대신들의 말이 다 권중현의 말과 비슷하였습니다.

폐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조약 초안이 어디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고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신 권중현이 말하였습니다.

‘신이 외부에서 얻어본 일본 황제의 친서 부분에는 우리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

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조약 조문은 나라의 근본 문제와 중대하게 관련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득이해서 더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웅당 따로 한 조목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폐하가 말하기를, ‘그건 과연 옳다. 농상공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여러 대신들 가운데는 폐하의 지시가 지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완용의 제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권중현의 제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일체 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폐하의 앞에서 사연을 보고하는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우리 여덟 사람이 똑같이 ‘이상 말씀드린 것은 사실. 미리 대책을 세울 준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물러나가 일본 대사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한 마디 말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폐하가 말하기를, ‘그러나 아까 이미 나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한규설과 박제순 두 사람은 말하기를, ‘신 등이 한 사람은 수석 대신이고 한 사람은 주임 대신으로서 폐하의 지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불과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일제히 물러나 나오는데 한규설과 신 박제순은 폐하의 지시에 따라 도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지시를 받고 잠깐 뒤에 다시 나와 모두 한규설이 모이니 일본 공사가 어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중략)

잠깐 뒤에 이등박문 대사가 군사령관 장곡천(長谷川, 하세가와 - 작성자)과 함께 급히 도착하였으며 헌병 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이 뒤따라 왔습니다.

일본 공사가 대사에게 전후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중략) 대사가 말하기를, (중략) 신 권중현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접견 석상에서 폐하를 면대하였을 때에 대체로 학부대신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 의견이 있는 것은 바로 황실의 존엄과 안녕에 대한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의 두 글자 사이에서 충신과 역적이 즉시 구별되기 때문에 참정 서리가 의견을 묻는 마당에서는 반대한다는 한 마디로 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황실의 존엄과 안녕 등에 대한 글자는 과연 더 보태야 할 문구

이니 이도 역시 찬성하는 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대신(大臣)들 중 한규설과 박제순만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 이지용, 신 권중현, 신 이완용, 신 심근택 및 민영기, 이하영은 다 문구를 침삭하는 마당에서 변론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 때 한규설은 몸을 피하기 위하여 갖도 쓰지 않은 맨머리로 폐하의 침실에 뛰어들었다가 외국인에게 발각되어 되돌아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때 양편에 분분하던 의견이 좀 가라앉아서 일본 대사가 직접 자기가 붓을 들고 신 등이 말하는데 따라 조약 초고를 고치고 곧 폐하에게 바쳐서 보고하도록 하여 폐하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다음에는 이 조약이 무효로 되어야 하니 이러한 뜻의 문구를 따로 첨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폐하가 지시하니 대사가 또 자기가 직접 붓을 들어 더 적어 넣어서 다시 폐하가 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조인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략)

바라건대 폐하는 나라의 체면을 깊이 생각하고 빨리 법부에 엄한 지시를 내려 이런 어지러운 무리들이 무리지어 일어나 무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몽땅 죄의 경중에 따라 법조문을 적용하여 징계함으로써 신 등이 실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 등 5명에게만 다행한 것이겠습니까?”

▶ 『매일신보』, 1909년 7월 7일.

“중추원 고문 권중현은 오조약을 성공한 후 영동으로 내려가서 산수 간에 한양 터니 무슨 냄새 또 맡고서 영금영금 올라 왔노. 오조약도 장하지만 칠조약엔 떨어졌네. 칠 대신 쫓으려면 구조약은 해야 될 걸”

▶ 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 7권, 소망출판, 2004, 153~166쪽.

“(전략) 이토 히로부미가 (중략) 여러 대신들에게 그 조항을 협의하라고 다그쳤다. 이하영과 민영기는 모두 ‘부(否)’라고 썼다. 이완용은 거기에다 쓰기를, ‘만약 위 조항의 자구를 조금만 고친다면 마땅히 인준하겠다.’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벌떡 일

어났다 앉으며 붓을 쥐고 소리쳐 말하기를, ‘학부대신의 말이 대단히 옳고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치겠습니다.’ 하고 제 뜻대로 두 세 곳을 약간의 문자로 지워 고치고 이어서 가·부를 물었다. 이완용과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다섯 사람은 일제히 모두 ‘가’자를 썼다. (후략)”

▶ 釋尾春菴 著,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 299~301쪽.

“어전회의는 17일 오후 3시부터 열려 밤이 되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략) 이토 대사는 (중략) 하세가와 군사령관을 대동하여 밤 11시 마차를 몰아 경운궁에 들어가 이태왕을 알현했다. (중략) 하야시 공사는 가부를 결정할 것을 재촉해 마지 않았다. 한 참정, 박 외무 등은 협약 조인의 불가를 말했다. 찬부의 순서는 학부대신 이완용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서히 입을 열고 (중략) 각원 전부 조인을 부결하면 이토 대사는 직접 폐하에게 조인을 압박하고 그 때 폐하는 어떻게 답할까 (중략)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외에 조약문에 (중략) 조건을 붙여두자고 말했다.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다시 황실의 안녕을 보증하는 1조건을 더해 두고 싶다는 희망을 붙여 이 학부의 말에 찬성하고,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등도 이에 찬성하고, 박 외무도 앞의 말을 버리고 찬성의 뜻을 표하여 (후략)”



3. <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子爵 勳一等 權重顯”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석한 후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奉授式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새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

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석한 자의 씨명은 좌와 같더라. (중략) 자작 권중현 (후략)”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100.6, 1926;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8일, 9일, 11일, 1911년 2월 23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을 수작함.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 5월 21일.

“昭和九年五月十五日 襲爵被仰付 故 子爵 權重顯 相續人 正五位 權泰煥”

4. <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 勳一等 權重顯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被仰付”

▶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5월 15일; 『동아일보』, 1920년 5월 12일.

“大正九年五月十日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子爵 權重顯 依願本職被免”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樞院敍任」.

“훈일등 김윤식씨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被仰付 (중략) 훈일등 (중략) 권중현 (중략) 全院 高文 被仰付 (후략)”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1910년-1920년].

1910년 10월부터 1920년 5월까지 중추원 고문을 지냄.

▶ 『조선총독부관보』, 1929년 7월 2일, 1932년 7월 7일; 『동아일보』, 1932년 7월 5일.
“正四位 勳一等 子爵 權重顯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被仰付”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29년-1934년].
1929년 7월부터 중추원 고문으로 복귀해서 1934년 3월 22일 사망 시까지 직위를 유지함.

5.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하사하신 귀족 반족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중략) 오후 1시 30분에 교부받은 자는 42명이니 (중략) 자작 권중현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일본 정부로부터 50,000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함.

2)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및 서위

▶ 「韓國宮內府大臣陸軍副將閔丙奭以下十九名敍勳ノ件」, 『敍勳』 卷3, 外國人, 1904

年;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67쪽; 李王職 編, 『조선귀족이력서』, 1913, 26쪽; 大村友之丞 編, 『조선귀족열전』, 조선연구회, 1910, 53~54쪽.

1904년 8월 4일 러일전쟁 당시 요양과 여순으로 건너가 일본군 위문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勳一等瑞寶大綬章을 받음.

▶ 출전: 『韓國宮內府特進官從一品勳一等申箕善外四十七名敍勳及賜金ノ件』, 『敍勳』 권7, 外國人五止, 1908年; 『조선귀족이력서』, 26쪽; 『조선귀족열전』, 94쪽.

1908년 11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유신과 시정개선에 진력한 공적으로 인해 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大正元年十二月七日 敍正五位 勳一等 子爵 權重顯"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5월 22일 부록.

1912년 8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에 대한 공로로 韓國併合記念章을 받음.

▶ 일본내각, 『관보』, 1916년 12월 13일 부록.

1915년 11월 10일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 시 일본 정부로부터 大正大禮記念章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8년 4월 17일.

"大正七年四月十日 敍從四位 正五位 勳一等 子爵 權重顯"

【참고사항①】 대한제국 훈포상

- 출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67쪽; 『조선귀족열전』, 94쪽.

1904년 10월 25일 勳一等 八卦章을 받음.

- 출전: 『순종실록』, 1907년 12월 28일; 『조선귀족열전』, 94쪽.

1907년 12월 28일 勳一等太極章을 받음

【참고사항②】 러일전쟁 참전 일본군 위문사

- 출전: 『고종실록』, 1904년 7월 13일.

“의정부 참정 심상훈이 제의하기를 (중략) ‘육군부장 권중현을 위문사로 특별히 파견하여 가서 위문하게 하고 그 길로 싸우는 것을 참관하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참고사항③】 사회단체 활동

1) 신사회 평의원

-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2일, 15일, 16일, 18일, 22일, 『황성신문』, 1907년 10월 12일, 15일, 18일, 25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37~42쪽.

1907년 10월 16일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관리들이 조직한 행사단체. 신사회는 정부측의 공식행사와는 달리 독자적인 행사를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전통적으로 중앙권력을 장악해 온 기호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과시·유지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권중현은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2) 대한여자흥학회 고문

- 출전: 『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大韓女子興學會』.

“각 황족 부인과 각 대신의 부인들이 황후 폐하 칙명으로 재작일에 운현궁에 회동하여 大韓女子興學會를 조직하고 총재는 완흥군 이재면씨의 부인으로 부총재는 총리 이완용씨의 부인으로 회장은 해풍 부원군 윤택영씨의 부인으로 부회장은 이재극씨 부인으로 사무원은 학무국장 윤치오씨 부인과 편집국장 어운적씨 부인으로

薦定하고 고문은 총리대신 이완용, 내대 임선준, 법대 조중응, 군대 이병무, 농대 송병준, 학대 이재곤, 중추원 고문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 이하영, 민영기, 이근택 제씨로 薦定하고 남자사무원은 윤치오 어윤적 제씨로 선정하여 일주일에 一次式討論演說한다는데 황후 폐하께옵서 該會에 매월 一千圓式 下賜하옵신다더라.”

- 대한여자흥학회는 1908년 5월에 조직된 황실과 왕족, 고위 친일관료 부인들의 친목단체로서 권중현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황성신문』, 1908년 5월 28일, 29일, 7월 15일; 『공립신보』, 1908년 6월 24일).

3) 동아개진교육회 회장

- 출전: 『황성신문』, 1906년 12월 20일.

“지난 일요일에 본회 회장 權重顯氏가 제1차 출석 연설 內開에 本會 五課分張이 實非教育主旨라 自今으로 五課事務를 總務所로 合并하여 結心團體에 廣設學校하고 期圖開進하라 하신즉 顧問長 金重煥氏가 再請하고 諸會員이 齊聲可決하여 會務를 從此漸臻 擴張할터이니 京鄉同會員은 開亮하시오.
光武十年 十二月 十九日 東亞開進教育會 告白”

- 출전: 『황성신문』, 1906년 12월 26일.

“廣告

本會 勸設이 已經數載에 教育義務가 擴張치 못하여 甚切憂悶터니 何幸 會長 軍部大臣 權重顯氏와 副會長 前 內部協辦 金重煥氏가 一般會員을 益加團束하고 教育主旨를 發達次로 會規를 更張하오니 京鄉 本會 僉君子는 照亮하시옵.

東亞開進教育會 告白”

- 출전: 『황성신문』, 1907년 1월 10일, 「開進會議」.

“지난 일요일에 開進教育會 會長 權重顯씨가 特別會를 열고 評議會를 組織하는데 評議長을 李忠求씨로 推薦하고 勸商所都事務長은 副會長 金重煥씨로 代辦하여 (후략)”

- 동아개진교육회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1905년 7월에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단체이며, 1908년 5월까지 존속했으며, 이후 대한실업장려회와 통합, 제국실업회로 재발족하였다. 1906년 12월에 권중현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황성신문』 1905년 6월 28일, 7월 11일, 11월 13일, 1906년 2월 27일, 3월 12일, 30일, 31일, 5월 3일, 7월 6일, 17일, 1907년 1월 10일, 16일, 5월 3일, 11월 30일, 1908년 4월 15일, 18일, 30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일, 1908년 8월 12일; 조재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혜안, 2001).

4) 여자교육회

- 출전: 『황성신문』, 1907년 5월 2일, 4일, 11일, 15일, 15일, 24일, 16월 5일, 10일, 25일.



강연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여성 교육을 발달케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 여자교육회는 본래 여자교육기관인 양규의숙(養閨義塾)을 설립,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그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친일파 거두로 ‘을사오적’ 중의 한 명인 이지용의 부인 이옥경이 총재에 취임하게 되면서부터 통감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친일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여자교육회는 본회·교육기구·찬무소(贊務所)라는 삼원적(三元的) 기구를 기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권중현은 양규의숙의 숙장으로 참여하였다.

5) 수양단 조선연합회 본부 창조원

- 출전: 『매일신보』, 1922년 8월 23일, 1923년 3월 1일, 9월 3일, 1924년 7월 26일, 12월 22일, 1930년 2월 23일, 1933년 7월 16일, 1934년 1월 20일; 修養團朝鮮聯合會本部, 『會則諸規程』, 1930.

권중현이 창조원으로 참여한 수양단 조선연합회 본부는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조선지부 조직으로 ‘동포상애(同胞相愛)·유한단련(流汗鍛鍊)’의 2대 주의를 내걸고 1922년 8월에 조직된 중견청년 육성과 사회정화를 표방한 단체. 식민통치 당국자,

일본인 유력자, 조선인 친일유력자들이 수양을 명목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하려 한 조직이었다.

6) 불교진흥회 고문

- 출전: 『불교진흥회월보』 제1호(1915년 3월) ~ 제19호(1915년 12월).

1914년 11월에 친일 승려 이회광(李晦光)의 주도로 조직된 불교단체. 친일인사인 권중현(權重顯)과 여규형(呂圭亨)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7) 삼십본산연합사무소 회주

- 출전: 三十本山聯合事務所, 「視察一束」, 『朝鮮佛教叢報』 제7호, 1917년 11월 20일.

일제의 협력과 지원 하에 1915년 1월에 조직된 불교계의 중심기관으로서 권중현은 회주로 참여하였다.

8) 불교옹호회 회주

- 출전: 『조선불교총보』 제2호(1917년 4월 30일), 제7호(1917년 11월 20일).

1917년 2월 이완용(李完用)·권중현(權重顯) 등의 주도로 설립된 불교계 친일단체. 전신은 불교진흥회였다. 권중현은 불교옹호회에서 회주를 담당했다.

9) 조선사편수회 고문

- 출전: 『동아일보』, 1923년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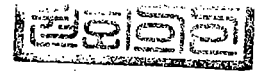
1923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고문으로 촉탁됨.

- 출전: 『동아일보』, 1925년 7월 25일.

1925년 7월 20일부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위원에 임명되어 활동.

1. 권중현이 1905년 군부대신으로 재직하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영일 등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진위대를 파견하는 명령을 내린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권중현이 1905년 11월 17일 한국의 보호국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요한 을사조약을 이완용, 박제순 등과 함께 찬성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속한다.



3.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이후 권중현은 일본 정부로부터 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10월 7일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1934년 3월 22일 사망 시까지 작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수작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4. 권중현은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한 달 뒤인 1910년 10월 1일 식민통치를 위해 조직된 조선총독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1920년 5월 20일 면직되었다. 1929년 7월 2일 다시 중추원 고문에 복직되어 1934년 3월 22일 사망 시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중추원 고문으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속한다.

5. 1904년 러일전쟁이 만주에서 진행 중일 때 권중현은 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요양과 여순에 위문사로 파견되어 일본군의 전쟁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시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 및 정세에 대한 상황을 귀국 후 고종과 내각에 보고하였다. 이 활동으로 인해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군대 위문사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1904년 8월 4일 훈1등 서보대수장을 받았다. 또한 그는 1908년 11

월 7일 일본통감부가 주도가 되어 실시했던 한국의 유신과 시정개선에 협력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그는 1912년 8월 1일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또한 그는 일본정부에 의해 1912년 12월 12일 정5위, 1918년 4월 17일 종4위에 서위됨과 함께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같은 해 11월 10일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권중현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또한 국권회복을 위해 봉기했던 의병들을 진압하는 명령을 내렸다. 권중현은 한일합병 과정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합병 직후 자작의 작위와 함께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1904년, 1908년, 1910년과 1915년 각각 훈1등 서보대수장, 훈1등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과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그리고 1912년, 1918년 각각 정5위, 종4위에 서위되었다. 이와 함께 권중현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고문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권중현의 이러한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 6, 7, 9,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